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51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주두수

변론 종결2023. 6. 21.

판결 선고2023. 7.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양도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가) 2011. 4. 8.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90,000,000원(이후 614,55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2. 4. 6.(이후 2021. 9. 3.까지 연장)

나) 2012. 5. 17.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305,000,000원(이후 1,2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3. 5. 16.(이후 2021. 11. 12.까지 연장)

다) 2019. 9. 19.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이라 한다): 보증번호 F, 보증금액 659,600,000원, 보증기한 2020. 9. 18.(이후 2021. 9. 17.까지 연장)

3) C는 제1보증에 기하여 G은행으로부터, 제2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3보증에 기하여 H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게 되었으며, C의 대표이사 B은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등

- 1) C는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은행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2) 원고는 2021. 12. 28. G은행에 620,395,971원(제1보증)을, 2021. 12. 28. H은행에 669,810,064원(제3보증)을, 2021. 12. 30. 중소기업은행에 1,273,926,486원(제2보증)을 각 변제하였다.
- 3) 이후 원고는 1,889,200원을 회수하여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562,243,321원이다(이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10%, 2020. 6. 1.부터는 연 8%).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8,522,983원이고, 추가 보증료는 10,308,600원(제1보증 3,291,580원 + 제2보증 3,731,670원 + 제3보증 3,285,350원)이다.
- 4)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보증: 제1보증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나) 제2보증: 제2보증 및 추가 보증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중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연대보증금액 652,500,000원(대위변제 잔액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 6,963,243원(대위변제증서의 이자 13,926,486원의 50%), ② 기타 비용 6,127,326원(= 추가보증료 3,731,670원의 50%인 1,865,835원 + 법적절차비용인 대지급금 8,522,983원의 50%인 4,261,491원)

다) 제3보증: 제3보증 및 추가 보증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중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연대보증금액 3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 5,105,032원(대위변제증서의 이자 10,210,064원의 50%), ② 기타 비용 1,642,675원(추가보증료 3,285,350원의 50%)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 및 경매절차의 진행

- 1) B은 2020. 11. 9. 피고와 사이에 본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인 2020. 11. 10.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810920호, 같은 법원 2022카단802754호, 같은 법원 2023카단803272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20. 11. 19.인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C의 은행들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시작한 2021. 12. 28.부터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21. 6. 4. 제1보증기한을 2021. 9. 3.까지로, 2021. 8. 13. 제2보증기한은 2021. 11. 12.까지로, 2021. 3. 17. 제3보증기한은 2021. 9. 17.까지로 각 연기하여 주었는데, 이는 C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C는 2021. 8.

6.부터 H은행의 대출원금 상환을, 2021. 10. 5.부터 기업은행의 대출원금 상환을, 2021. 10.

11.부터는 G은행의 대출원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9. 11. 27. B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양천세무서는 2021.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별지 채무초과 내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피고에게 '신협으로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대출금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유통 없이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B은 아무런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만을 설정하였으므로, 비록 그것이 가압류해제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 피고는 B의 요청으로 채권액 10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체하였던 것이고, B이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는 C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② 피고 스스로 대출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B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가 B의 자금사정 악화를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존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선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배분된 배분금지급청구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회근

별지